

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2000. 2.19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9년 12월 20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2000년 2월 18일 (제170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사회복지과장 김문배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현실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출납원의 직명변경 (제13조 제1항)
 - 가정복지담당사무관 → 경로복지담당사무관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동윤)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기금출납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 안 가 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 타 필 요 한 사 항 : 없 음

9. 첨 부 서 류

가.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규조문대비표

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3조 제1항중 “가정복지담당사무관” 을 “경로복지담당사무관”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사 무 명	사 무 명
<p>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관리조례</p> <p>제13조(회계관리)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, 기금 출납원은 <u>가정복지담당사무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②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연합회장으로 하고, 기금 출납담당을 연합회 사무처장으로 한다.</p> <p>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.</p>	<p>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관리조례</p> <p>제13조(회계관리)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, 기금 출납원은 <u>경로복지담당사무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